

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59
----------	------

2017년 2월 22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7년 2월 16일, 이승로, 김동율 의원(찬성자 9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1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17년 2월 22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승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기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, 감경 기준이 모호하므로 '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'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부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9 제1호가목의 1)부터 6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3. 검토보고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, 현행 조례가 위험물 저장·취급 등의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이 동기·경위 및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까지 감경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의 감경기준을 준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감경대상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.

[표] 과태료 감경여부 판단기준

현행	개정(안)
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이 동기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해 감경	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[별표9] 제1호가목 1) ~ 6)에 따라 감경 ※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면 불가 명시

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

제23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**[별표 9] 과태료의 부과기준**

1. 일반기준

가. (생략)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먼저, 최근 3년간 과태료부과 현황을 살펴보면, 위험물 표시 및 게시관 미설치,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·취급기준 위반 등 총 59건에 대해 현행 조례 제8조에 근거해 과태료<sup>1)</sup>를 부과하였는데, 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~50%의 과태료를 감경하여 징수하였음([표] 참조).

[표] 최근 3년간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

구분	감경사유(감경률)	건수	건당 부과금액	건당 징수금액	비고
감경	사전통지기간 내 자진납부(20%)	48	300,000	240,000	= (과태료)×(1-0.2)
	사전통지기간 내 자진납부(20%) +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(50%)	6	300,000	120,000	= (과태료)×(1-0.2) ×(1-0.5)
	사전통지기간 내 자진납부(20%) +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 즉시 시정(50%)	4	300,000	120,000	= (과태료)×(1-0.2) ×(1-0.5)
비감경	-	1	300,000	300,000	
계		59			

○ 과태료 감경은 현행 조례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이 위반행위에 대해 동기·경위 및 결과를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음.

1) 1차 위반 시 30만원, 2차 위반 시 50만원,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

[표] 현행 과태료 감면 근거 법령

감면사유	근거 법령	감면율
사전통지기간 내 자진납부	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5조	20%
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 즉시 시정	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 및 별표9 제1호가목	50%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- 따라서, 현행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상위법령에 근거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감경부과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조치라 여겨짐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9 제1호가목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3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4.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5.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6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기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까지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8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9 제1호가목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</li> <li>2. <u>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</u></li> <li>3. <u>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</u></li> <li>4. <u>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</u></li> <li>5. <u>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</u></li> <li>6. <u>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li> </ol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